

2020학년도 제1회
경찰사법대학 독서에세이경진대회

우수 에세이 선집

LIVE

dongguk
UNIVERSITY 

경찰행정학부

목 차

대 상 작

- 〈범죄 그 진실과 오해〉 청소년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해방하라 /
56기 이민지

최 우수 작

- 〈패러독스 범죄학〉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
55기 박아현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 양상 /
58기 이 슬

우 수 작

- 〈범죄 그 진실과 오해〉 코로나밴드의 실효성에 관하여 /
53기 고나현
〈패러독스 범죄학〉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범죄 /
54기 박철남
〈패러독스 범죄학〉 '형사 노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
55기 고 은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사건 절차에 대한 고찰 /
56기 정윤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와 두려움 /
57기 김소연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안희정 사건을 통해 본 피해자 비난의 심각성 /
57기 김은빈
〈범죄와 형벌〉 형벌의 정당성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대안 /
57기 방지원

대 상

청소년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해방하라

- 『범죄, 그 진실과 오해』로 바라본 n번방 사건

2018111298 이민지

I. 들어가며

II. 청소년과 사이버 성범죄

1. 그들은 어째서 n번방을 만들었을까
2. 누구의 잘못인가
3. 청소년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해방하라

III. 마치며

I. 들어가며

2020년 2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감히 상상치도 못할 만큼 끔찍한 수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70여 명의 피해자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이 사건은,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사건은 보안이 철저해 사용자와 대화 내용을 추적하기 어려운 SNS인 ‘텔레그램’과 다크웹, 그리고 암호화페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인데, 놀랍게도 현재까지 검거된 n번방 사건 주 가해자 집단은 평균연령 21.3세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사이의 젊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¹⁾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텔레그램에는 n번방, 박사방, 고담방, 지인합성방 등의 수많은 종류의 대화방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악질은 트위터에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일회성 만남 혹은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탈계’에 경찰을 사칭해 접근하여 계정 주인의 신상 정보를 빼돌리고, 그들을 철저히 그루밍(Grooming)²⁾ 하여 결국 성 착취의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칼로 신체에 글씨를 새기고, 벌레를 성기에 넣는 등의 ‘명령’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들은 가해자들에게 ‘노예’라고 불리었다.

문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도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할 청소년기에 끔찍한 사건에 휘말린 그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 혹은 20대 청년인 n번방 사건, 우리는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맞서야 한다. 범죄자와 범죄 수법, 범죄의 공간이 상당 부분 ‘대체(Displacement)’된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가해자 개개인이 특별한 서사를 가진 ‘희대의 악마’라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일탈계를 운영한 피해자들의 책임인가? 이 모든 수법의 온상을 제공해준 인터넷과 SNS가 문제인가? 이윤호는 그의 저서 『범죄, 그 진실과 오해』에서 “범죄란 엄연히 사회적 현상으로서 환경적인 요소를 떼어놓고는 범죄를 논할 수 없다³⁾”고 역설한다. n번방 가해자인 ‘갓갓’, ‘박사’, ‘부따’ 등과 같은 이들은 희대의 악마가 아니며, ‘일탈계’로써 잘못된 성적 욕구를 표출하고 때로는 금전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이들 또한 제 발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토록 젊은 청춘들이 잔혹한 사이버 성범죄의 세계로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n번방 사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범죄 형태일까. 앞으로 다가올 사이버 성범죄 시대에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n번

1) 최종호, “n번방 범인들 평균나이 21.3세... ‘젊은 사이버강력범’ 횡행”, 연합뉴스, 2020.05.13

2) 그루밍 성범죄(Grooming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지배하여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루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그루밍 성범죄’]

3) 이윤호,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7, 63p.

방 사건을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라는 카테고리로 보고, 간략하게나마 분석을 시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한다.⁴⁾ 우선, 청소년들이 어째서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자 비난’과 그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해 비판하고,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큰 맥락에서 강구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기존의 법적 연령과는 달리 20대 초중반의 청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령대라는 것은 칼로 자르듯 정확히 자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접했던 환경적 요인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II. 청소년과 사이버 성범죄

1. 그들은 어째서 n번방을 만들었을까

‘n번방’이라는 키워드가 연일 포털 사이트를 장악하고, 급기야 관련 국민 청원이 250만이 넘는 동의를 받은 후,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 씨에게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졌다. 포토라인에 선 ‘박사’의 모습은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청소년 가해자 중 한 명인 ‘부따’, n번방 운영의 시초였던 ‘갓갓’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이었으며,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태초부터 범죄자거나 희대의 악마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찌다가 n번방을 만들게 되었을까?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범죄, 그 진실과 오해』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일반범죄와 달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본인의 접속위치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메인 등을 경유하여 특정 사이트에 침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어렵게 한다.⁵⁾ 여기서 특정 사이트는 보통 ‘다크넷(Darknet)’으로 불리는 일종의 딥웹(Deep web)인데, 일반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마약·무기·음란물 등의 암시장으로 악용되어지고 있는 사이트다.⁶⁾ n번방의 경우에는 다크넷 등에서 접속 경로가 공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n번방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를 구매하여 시청했던 대규모 가해자 집단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기반 SNS와 암호화페 사용을 통해 음지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때문에 청소년의 신분으로

4) 최근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대체로 쓰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범죄, 그 진실과 오해』에서 사용한 ‘사이버 성범죄’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5) 위의 책, 20~21p.

6) 이성애·조호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8, p.4

도 활동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웰컴투비디오’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씨 또한 청소년 시절부터 20대 초반인 현재까지 다크넷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판매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이 익숙했던 청소년·청년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자.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인생의 중요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흡수력이 아주 높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왔던 지금의 청소년들은 여타의 어느 연령층보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적이고 활용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 주변 환경에 대한 높은 흡수력은 인터넷 그 자체뿐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손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스미디어와 커뮤니티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아왔던 그들은 왜곡된 성 관념을 형성했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 이를 잘 설명하는데, 범죄의 학습은 친근한 집단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만 학습되는 것(차별적 접촉이론)이 아닌,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도 충분히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들이나 실제 현실이 아닌 사이버 상의 비현실적이고 선정적 정보들로서 우선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자극하는 음란물들, 그리고 ‘몰카’와 같이 왜곡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하지만 『범죄, 그 진실과 오해』에서 설명하듯, 모든 사람들이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버코비츠(Berkowitz)는 ‘기폭제 효과’에 따라 대중매체가 특정한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의 유관 개념과 생각 등을 다소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⁷⁾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탈적 성향과 범행 동기를 가졌거나 차별적 접촉으로 인해 비행을 학습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넘쳐흐르는 유해 매체들을 접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폭제를 곁에 두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이들 청소년들이 ‘성(性)’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차 성징이 활발해지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할 이 시기에,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단순히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정을 배우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와 같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성교육은 흥미도 부재할뿐더러, 상당수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이런 그들이 선택한 성교육은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비인격적인 음란물이었고, 친구들과 이것을 하나의 문화인양 공유하며, 그 프레임을 같은 반 학우들 혹은 길거리의 이성에게 그대로 가져다 씌워버렸다. 비정상적인 음란물·성착취물 성행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에 대한

7) 이윤호,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7, 131p.

수요이다. ‘어린 이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그러한 음란물을 선호하고 이들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에 대해 값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n번방 영상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청소년기의 비정상적인 성관념 형성 과정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익명성, 개인의 일탈 성향, 금전적 목적, 그리고 비정상적인 음란물에 대한 꾸준한 수요 등이 청소년들이 n번방 가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사’, ‘갓갓’ 등은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표상이다. 이들이 엄청난 서사를 가진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이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누구의 잘못인가

이번에는 피해자들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여기서는 소위 ‘일탈계’를 운영하다 가해자들의 속임수에 걸려들어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집중해보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자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성적으로 일탈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범죄자는 살인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다. 더 확실한 것은,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있다고 해서 그를 실제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엄연한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늦은 시간에 짧은 치마를 입고 밤거리를 돌아 다녔다고 해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탈계를 운영했다고 해서 사이버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n번방 안에서 음란물 제작자와 구매자들이 피해자를 ‘당해도 되는 노예’로 바라보는 것은 ‘피해의 부인’, 즉 중화의 기술에 불과하다. 특히나 이 청소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이며, 청소년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성관념을 형성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

물론 이들이 성적 일탈 혹은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찍어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것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일부는 조건 만남을 하거나 자신이 입던 속옷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판매하는 등 자신의 성을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엄연한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위법 행위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루밍’을 통해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와 자해 행동을 억지로 해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오프라인으로 불려가 물리적인 성범죄를 당한 청소년들을 일차적으로는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3. 청소년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해방하라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하고, 연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은 그의 성장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이 사이버 성범죄와 같이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되고 범법을 저지르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청

소년은 그 특성 상 범죄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한 번 범죄의 길로 발을 들이면 기타 관련 범죄들에 진입하기가 비교적 쉽다. 또한 그들에게는 또래 집단이 가장 영향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라 집단·조직적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신체와 정신이 아직 미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의 범죄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훈계와 교화를 우선시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비난의 여지를 줄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분과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형사정책도 필수적이지만, 짧은 글이니만큼 처벌 수위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범죄의 일선에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사이버 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성범죄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인권을 다 같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양보해야 아이들을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⁸⁾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강도 높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이버 범죄의 수사에 제약을 준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도 문제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고, 인터폴 등의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권력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그동안 ‘들키지 않는다.’는 안일한 일념이 수만 명의 n번방 시청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사법기관의 3차 가해 근절, 철저한 수사과 처벌 등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 처리와 피해 예방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피해 회복,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올바르게 인지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돈벌이, 알바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엄연히 범법이며 반윤리적이고 가학적이며 언제든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그루밍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 않는가. 무엇보다 정책이나 행정처리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과 개인정보 리셋 등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추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힘들거나 고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더라도 성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처음 접하는 곳이 ‘가출팸’ 등과 같은 비행 청소년 집단인데, 근본적으로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국가 모두가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8) <https://www.youtube.com/watch?v=rc1GqT4yVnA>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꾸준히 노력하여 개선해야 할 거시적 해결책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다.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지역 사회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교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성범죄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도 결국엔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 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와 교육단체들이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행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은 성범죄 예방과 성관념 형성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독립변인들과는 달리 '성희롱예방교육 경험 여부'는 성태도, 성희롱·성폭력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⁹⁾ 이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그다지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교육은 전달력 있고 흥미로우며, 사회학과 심리학, 역사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성(性)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매체(유튜브, SNS 등)를 통해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적 정책을 다각적으로 '셉테드(CPTED)'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다. 셉테드는 물리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2세대 전략을 사용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인데¹⁰⁾,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면, 양질의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Ⅲ. 마치며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악랄한 악당 무리에 의해 불쌍한 희생자가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 갓갓과 박사는 또 다른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열광하는 조건 만남의 대상으로, 성착취의 대상으로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사건은 지금껏 우리 사회에 있던 잘못된 성관념과 강간통념 등의 집합체이자, 인권 신장의 바람에 맞물려 드디어 대중 앞에 심판 받을 수 있게 된 하나의 사건이자 일례에 불과하다. 즉 완전한 가해자의 잘못도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도 아닌, 사회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라는 중대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형사사법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지독한 범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9) 위진희,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성태도, 성희롱·성폭력 인식과의 관계」, 2014, 43p.~47p.

10) 이윤호,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7, 205p.

최우수상

패러독스 범죄학 독서 에세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2017111344 박아현

I. 서론

1. 촉법소년의 정의
2. 논의의 필요성

II. 본론

1.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론
2.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론 및 판례
3. 사건

III. 결론

1. 서론

『패러독스 범죄학』(이창무, 2015)(이하 도서)은 범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고, 범죄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저술되었다. 각 장에서 범죄의 실제 추세부터 이에 대응하는 법집행기관의 본 모습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에세이는 이 중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75-81)와 ‘학교 폭력의 비겁한 가해자들’(134-139)에 중점을 두어 고찰 할 것이다. 다만, 저자는 2008년 이전의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를 주로 인용하였지만 본 고에서는 2008년 이후 통계를 근거로 서술하고자 한다.¹¹⁾

지난 3월 29일 대구의 청소년들이 차량 절도 후 도주 중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이 처분에 동의하지 못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처벌 청원을 올렸고, 1,007,040명의 동의를 얻었다.¹²⁾

위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촉법소년, 그 중에서도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본 에세이에서는 해당 논의에 대한 찬성, 반대 주장을 모두 살펴보고 나아가 청소년들에 가장 효과적인 처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¹³⁾ 이는 소년법과 형법에 기반을 둔다. 우선, ‘형사책임이 없는 자’란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들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만 14세 미만, 심신상실자 등이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전자에 해당하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¹⁴⁾에 따라 형을 면제 받는다. 한편,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은 소년법 제4조 제1항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서 온 것으로, 형사책임은 묻지 않지만(만 14세 미만), 보호처분은 할 수 있는 연령(만 10세 이상)의 범위를 정한다.

2. 논의의 필요성

<그래프 1>¹⁾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현황이다. 도서의 저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촉법소년의 범죄의 경우 그 발생건수가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1>²⁾는 촉법소년의 연령별 분포이다. 대부분의 범죄가 상한선인 13세에 몰려있으

11) 2008년부터 소년법의 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됨.

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검색일:2020.05.12.)

1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02&cid=50300&categoryId=50300>, (네이버 경찰학사전, 검색일: 2020.05.12.)

14)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며, 해당 연령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14.7%).

위의 두 통계자료는 촉법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실재함을 보여주는 한편 그 상한선인 13세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II. 본론

1.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론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11일 있었던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논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의 13세로의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처럼 자기책임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이라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지만, 이들은 번번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비판에 따른 결과이다.¹⁵⁾

이런 입법 움직임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장제원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¹⁶⁾에서도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¹⁶⁾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안 뿐 아니라 문헌¹⁷⁾에서도 연령 하향 찬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저연령소년들의 정신적 발달상태의 변화, 저연령소년의 강력범죄율 증가 등을 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 할 만 한 부분은 가해자의 연령이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 절차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판례에서 부정되었다-판례 후술)

이 외에도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배제는 형법이 추구하는 사회보호기능에서 벗어났다는 점, 형사처벌의 부재로 소년 범죄의 발생의 역제가 어렵다는 점, 국민 일반의 법감과 배치된다는 점 등이 찬성론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2.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론 및 판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문헌에서는 찬성 논거에 대한 반증으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첫째, 과거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없다.

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5/99230648/2>, (검색일: 2020.05.15.)

16) [법안]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국회법률도서관, 2017.09.14.

17)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정신교/차시환, 법학연구, 2014

지식 습득의 절대적 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신적 성숙 또는 의지적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또한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의무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신적 성장 기간이 훨씬 길어졌음을 의미한다.¹⁸⁾ 둘째, 현재 연령 기준이 형법의 사회보호기능을 저하시킬 만큼 현소자의 법익침해가 빈번하고 심각하지 않다. 또한 현재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법익침해행위도 보호처분을 통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인 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일탈 행동이 비단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점, 형사처벌로 인한 학업 중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¹⁹⁾ 등이 반대론의 주된 논거이다.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로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인 2002헌마533을 들 수 있다. 이 판례의 본질적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지만, 판결 이유에서 형법 제9조의 타당성을 명시²⁰⁾하고 있으며, 추가의견에서도 하한 연령의 폐지²¹⁾를 논할 뿐 상한 연령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바, 상한 연령 하향 반대의 입장의 논거로 들 수 있다.

3. 사건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에 반대한다. 일탈 행동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회적 관점, 형벌이 능사는 아니라 보는 개인적 관점이 그 근거이다. 먼저, 사회적으로 보면 촉법소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 13세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내지는 2학년 학생이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동이라는 큰 시스템의 변화를 맞는다. 하루 일과 모두를 한 선생님과 함께 하던 초등학교에서 매 과목 선생님이 바뀌는 환경은 ‘보호자’의 한 축이 사라짐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의 혼란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이런 혼란 속에서의 일탈을 근거로 촉법소년 상한 제한을 낮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인적 관점에는 최근 읽은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박영화 저)’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책의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라는 부분에서 ‘그저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교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럴 경우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감과 판사

18)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57-286, 김혁, 2019.04.

19)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8%95%EC%82%AC%EC%B2%98%EB%B2%8C%EA%B3%BC-%EB%B3%B4%ED%98%B8%EC%B2%98%EB%B6%84-%EC%82%AC%EC%9D%B4%E2%80%A6%EC%9A%94%EC%A6%98-%EC%A4%911-%EB%B2%94%EC%A3%84-%EC%96%B4%EC%B0%8C%ED%95%A0%EA%B9%8C%EC%9A%94/ar-BBZ1LPB> (검색일:2020.05.15.)

20)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1) 12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이 그 이유였고 2008년 하한 연령이 10세로 낮아졌다.

를 향한 원망만 커진다. (...)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찾게 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진심으로 교화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물론 몇몇 흉악한 청소년 범죄를 보면 엄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소수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다수의 아이들의 손마저 놓아버리는 처사다.²²⁾ 또한 형벌이 가지는 일반예방적 효과도 보호조치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대법원 1990.6.26. 90도887 판례를 보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조치 또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경고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 짧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WEE-CLASS의 확대다. 위 클래스는 학교 내에서 주의산만,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학습흥미 상실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²³⁾ 상담을 통해 인성지도를 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별점이 많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위 클래스 선생님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은 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보호자의 부재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비행과 일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부모교육이 있다. 이 책의 ‘학교폭력의 비겁한 가해자들’에서 볼 수 있듯, 학교폭력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 범죄의 악순환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부모 교육 없이는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덕양중학교에서 실시중인 ‘이슬비사랑 학부모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학부모들의 모임이지만, 그 중심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자신에게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상처를 투영하지 않는 부모로 거듭 날 수 있다.

Ⅲ. 결론

본 고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와 그 상한연령 인하에 대한 찬성·반대론 그리고 청소년 범죄 감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²⁴⁾라는 촉법소년의 정의에 대해 그 상한 연령인 13세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주장 모두 나름의 논거를 갖추고 있으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년법에

22) 연소자에 대한 형벌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화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5164&cid=62841&categoryId=62841> 검색일:2020.05.15.

2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02&cid=50300&categoryId=50300>, (네이버 경찰학사전, 검색일: 2020.05.12.)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여론에 휩쓸린 개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수적이다.

1) <그래프 1>/「서울인포그래픽스 제287호」,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9.05.20.



2) <표1>/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경찰청, 2018.07.17.

○ 촉법소년(연령별)

구분	총계	10세	11세	12세	13세
'17. 6월	3,167	198	315	694	1,958
'18. 6월	3,416	174	337	659	2,246
대비(%)	7.9	-12.1	7.0	-5.0	14.7

최우수상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 양상

2020111250 이 슬

I. 머리말

II.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 양상

1. 스토킹
2. 한국 부모의 극단주의와 아이들의 엄마 혐오
3. 약자 혐오

II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극단주의’에 대해 에세이를 쓰기에 앞서 이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에는 복잡한 특징과 요소들을 모두 나타낼 수 없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의 저자 김태형의 말을 빌린다. 김태형은 극단주의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극단주의의 4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로 자기(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배타성’을 띤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즉 ‘광신’, 세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타인이 믿도록 ‘강요’하는 것, 네 번째로 ‘혐오’의 특징을 띤다. 김태형에 따르면 어떤 것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배타성, 광신, 강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혐오는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징은 아니라고 한다.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자신 외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으며, 자신의 의견·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나아가 혐오하는 것을 극단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극단주의’는 우리 사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요소 중 하나이다. 정치적 파시즘, 나치즘, 백인 우월주의, 인종 혐오도 극단주의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앞서 말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종교나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극단주의는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극단주의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한국도 극단주의로부터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김태형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화는 개인과 집단 간 갈등,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행동과 범죄 등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주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에세이에서 한국의 극단주의 양상을 잘 나타내는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 양상

1. 스토킹

스토킹은 스토키가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환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한다. 김태형에 따르면 스토키가 위의 일반적인 환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이런 믿음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도달한 결론이 아니다. 즉 자신의 환상은 사실이며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배타성에 기초하여 이를 광신하고, 자신의 믿음을 스토킹 대상에게 강요한다. 이는 전형적인 극단주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토킹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에 발생한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이 겪은 스토킹 사

건을 들 수 있다. 스토키는 술에 취한 상태로 1년 동안 계속 조혜연의 학원 앞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조혜연의 학원에 난입해 그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한 스토키는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 구애하는 내용이나 “더러운 여자” 등 모욕적인 내용을 조혜연의 학원 건물 외벽에 낙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외에도 ‘구애’를 가장한 범죄인 스토키의 사례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스토키를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고, 스토키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신고나 처벌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스토키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빠른 시일 내로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스토키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부모의 극단주의와 아이들의 엄마 혐오

김태형에 따르면 한국의 아이들은 학대 위계 사회의 최말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부모들의 공부 강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며, 공부를 못하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게끔 행동한다고 한다. 김태형은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한국 부모들의 태도가 극단주의에 포함된다고 하며 그 이유는 “한국 부모들이 공부 못하는 자식(정확히 말해 미래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타성’,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미신에 대한 ‘광신’, 자식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는 ‘강요’,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혐오’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국 부모의 극단주의는 아이들의 엄마 혐오로 이어지는데, 김태형에 따르면 아이들의 분노는 자신을 사랑해 주고 지지해 줘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괴롭히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엄마를 향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의 존재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가 아이의 성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엄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분노와 적개심이 엄마를 향해 집중 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비하하는 패륜적 언어행태를 의미하는 ‘패드립’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엄마와 관련된 욕인 ‘니애미, 느금마, 엠창’ 등도 패드립에 포함되며, 이는 청소년들의 실제 언어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빈번하게 쓰인다.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위와 같이 자식에 대한 공부 강요가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혐오하는 이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혐오의 방향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향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약자 혐오

김태형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필연적으로 극단주의를 낳는다고 한다. “어떤 집단을 혐오하면 그 집단을 ‘배타’하게 되며, 그 집단을 배척하거나 혐오하는 데 유리한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광신’에 사로잡히고, ‘강요’를 통해서 혐오 대상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거나 절멸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이 약자로 간주되며 혐오의 대상이 된다. 먼저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최근 이태원 성소수자 클럽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19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혐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들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혐오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틀린’ 게 아닌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성 혐오 또는 여성 증오는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치녀’와 같은 여성 혐오 표현이 사회로 번지고, 힙합 장르에서는 여성 혐오를 컨셉으로 삼아 일종의 콘텐츠로 소비하기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등 여성혐오가 일종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성 혐오범죄 또한 흔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낮은 사회 인식과 차별, 공격이 무비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여성이 약자임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를 멈추어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장애인 혐오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생활에서도 만연하게 퍼져있다. 이는 장애인 차별 용어나 혐오 단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비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비장애인에게 ‘병신’이라고 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차별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약자임을 인정하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혐오를 거둬야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를 바탕으로 스톡킹, 한국 부모의 극단주의와 아

이들의 엄마 혐오, 약자 혐오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극단주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의의는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를 위의 세 가지 유형 중심으로 파악하여 극단주의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독자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극단주의의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한 점과 극단주의의 가 나타나는 유형과 문제점을 모두 언급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 ‘극단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한국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김태형의 말처럼 극단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고 나아가 척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시도하고, 극단주의 척결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사, 포스트

- 이랑, 「'구애'의 탈을 쓴 범죄, 스토킹」, KBS NEWS, 2016.02.15. 수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2043&ref=A>(2020.05.18.)
- 이유민, 「[단독]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이 겪은 스토킹...”하루하루가 지옥“」, KBS NEWS, 2020.04.24. 작성.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304&ref=A>(2020.05.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상 속 피해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 2019.03.27. 작성,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657427&memberNo=3501412&vType=VERTICAL>(2020.05.18.)

사전

-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B%82%A8%EC%97%AD_%ED%99%94%EC%9E%A5%EC%8B%A4_%EC%82%B4%EC%9D%B8%EC%82%AC%EA%B1%B4(2020.05.18.)
- “성소수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6%8C%EC%88%98%EC%9E%90>(2020.05.18.)
- “스토킹”,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435&cid=43667&categoryId=43667>(2020.05.17.)
- “여성혐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ED%98%90%EC%98%A4>(2020.05.18.)
- “패드립”,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351&cid=43667&categoryId=43667>(2020.05.18.)

우수상

코로나밴드의 실효성에 관해

- 전자발찌의 선례를 참고하여

2015111263 고나현

I. 서론

II. 전자발찌제도

1. 전자발찌제도의 개념
2.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

III. 코로나 안심밴드에 대한 쟁점

IV. 개인적 의견

1. 실효성에 대한 문제
2. 인권 침해의 문제

V. 결론

I. 서론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이탈한 131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사례는 393건 그리고 384명에 이른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케이스는 122건에 131명이다. 이 중 자가격리를 위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0명이며 10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다가 격리 해제됐고, 20명은 현재 착용중이다(14일 기준).

코로나 안심밴드에 대하여 사람들의 찬반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일지라도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갑론을박하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안심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안심밴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 그리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케이스에 대한 선례는 중요하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위치추적 밴드에 대해 우리는 선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행히 코로나 밴드와 유사한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지금도 약 3000여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우리는 전자발찌 사례의 교훈을 통해 코로나 안심밴드 제도를 더욱 성숙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전자발찌의 선례를 보았을 때, 코로나 안심밴드가 실제로 효용이 있을 것인지,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전자발찌제도

1. 전자발찌제도의 개념

‘전자발찌’는 보호관찰제도 중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을 말한다. 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자감독’은 GPS 방식을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대중들의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범죄 억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성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디를 가는지, 소아성애자의 경우 놀이터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고 있는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성폭력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주로 재범률이 높은 재소자들이 전자발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으로 범죄를 억제하여 재범률을 줄일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한결 수

일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의 효용가치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2.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

1)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연합뉴스의 이은재기자는 19년 9월 25일에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매년 증가...5년간 308건”이라는,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및 훼손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재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19년에는 월 평균 재범자 수가 4.2명으로 전년 6.9명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이다.

* 전자감독 대상자 수 : 3,598명('15년) > 4,668명('18년)

*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자 수 : 83명('18년) > 34명('19년 8월)

전자발찌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2019년 5월 8일 ‘여성 범죄 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고 공개 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여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와 대면이나 전화통화, 현장출동 등의 형태로 지도, 감독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성통화로만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제대로 경보를 확인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입금지 위반을 알리는 경보가 몇 분이나 울렸지만 이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2) 인권 침해의 문제

헌법은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전자발찌제도에서 드러난다. 대상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마약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전자발찌 때문에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한다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발찌법에 의하면 이미 형기를 만료한 자에게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미 형을 만료한 자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이러한 2차적 낙인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회화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또한 존재한다.

Ⅲ. 코로나 안심밴드에 대한 쟁점

오늘자(2020.05.15.) 자가 격리자가 3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자들이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로나 안심밴드는 하나

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밴드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4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한 비공개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체 격리자의 0.1% 수준에 불과한데 강력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반강제적인 방안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욱이, 이러한 전자팔찌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 의견 중 하나이다. 전자팔찌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두고 운영되고 있고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법원의 부착명령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자팔찌의 경우 그러한 절차가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실효성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 법 절차 미비의 문제가 코로나 안심밴드 적용에 대한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겠다.

IV. 개인적 의견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휘청거릴 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기사태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외신들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최근 이태원으로부터 다시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여러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격리를 이탈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소수의 이탈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의 접촉을 확인한 후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 결과 나중에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추가감염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이러한 모범적인 자가격리자도 있는 반면, 다방을 방문하거나 주변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자가격리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 코로나 안심밴드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전자팔찌 도입 이후 쌓아온 선례를 활용하여 우리는 코로나 안심밴드를 성숙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자팔찌제도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코로나 안심밴드는 추가 감염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실효성에 대한 문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팔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내려가고 있으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전자팔찌와 유사하지만 손목에 착용한다는 점만 다른 코로나 안심밴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용 수신 장치를 놓고 도망 가버리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전자팔찌의 단점은 2019년 일체형 전자팔찌가 도입되면서 일부 해소되었다고 한다. 일체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감응 이탈 경보가 많이 울려도 일일이 출동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보 중 상당수가 단순 실수였거나 기계의 오작동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자팔찌는 실효성을 한층 높였으며 이는 코로나 안심밴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안심밴드는 재범률이 높은 자가 격리자들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정부가 자가격리

자를 관리하는 데에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격리자들은 자가격리 어플을 통해 관리하지만 이미 이탈을 했던 격리자의 경우 좀 더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관리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난 학기 수강했던 ‘교정 복지와 상담’이라는 수업에서 준법지원센터에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었다. 그 때 실시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경보가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경보가 꽤 자주 울렸다는 것이다. 그 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많은 경보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력상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자가격리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코로나 안심밴드는 재범을 낮추고 이탈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이고 지금 모든 인력이 이 위기 해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이러한 조치는 다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 인권 침해의 문제

사람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이가 아닐까 싶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국가 위기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개인정보의 활용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위기와는 다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하면 개인을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 전염병이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위기라면 모를까, 개인의 기본권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동선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코로나 밴드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 검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범죄자 검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리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지만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꺼이 지문채취에 응한다. 남성에 비해 힘이 약하고 무력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낮은 여성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제도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 밴드 또한 모두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탈의 고의성이 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채워진다. 그리고 이는 강제적인 조치도 아니다. 격리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밴드를 착용할 것인지 이탈자가 결정할 수 있다.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밴드 착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격리시설에 수용시키는 것보다 밴드 착용이 더 인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밴드는 양날의 검과 비슷하다. 잘 쓰면 추가 감염을 막는 좋은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 것인지,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제까지 전자발찌제도의 선례로 보아 코로나 밴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소수의 인권 침해는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 밴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가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밴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미비점을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완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들의 인권이 너무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 위기는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법 제정에 지체가 없어야 한다. 전자발찌제도를 참고하여 밴드 착용까지의 여러 절차들을 만드는 것은 대상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코로나 밴드 제도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얼른 진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여러 수칙들을 잘 지키는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 한 민족이 이제껏 많은 위기를 하나로 뭉쳐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바이다.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어서 다가왔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이윤호, 『범죄, 그 진실과 오해』, 박영사, 2017
 정혜인,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2012
 장진환, 「이른바 전자발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 고려대학교대학원, 2010
 최인영, “자가격리 위반 131명에 기소의견...30명 안심밴드 착용”, 연합뉴스, 2020.05.14.
 이종현 “구멍 뚫린 성범죄자 전자발찌 시스템...거짓 전화보고에 속수무책”, 조선일보, 2019.05.08.
 “(탐정 손수호)전국에 3106명...전자발찌 A to Z”, 노컷뉴스, 2019.01.31. 김현정의 뉴스쇼 속기

우수상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범죄

2016111239 박철남

I. 서론

II. 본론

1. 범죄 통계와 언론
2. 합리적인 범죄자들
3. 범죄의 원인
4. 형사사법의 문제점

III. 결론

I. 서론

‘범죄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다’

이 책, 『패러독스 범죄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범죄가 존재하며 범죄는 인류의 숙명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을 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고들 한다. 현대에도 물론이고 과거에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다.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는 곧 범죄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듯 범죄와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누구도 범죄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범죄를 없는 척 무시할 수도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가는 것 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범죄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언론과 왜곡된 범죄 통계를 통해 범죄를 잘 알지 못 한다. 범죄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허상이 아닌 범죄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예방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걱정에 헤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조금은 덜 하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항상 오늘 일어난 범죄들을 보도하고 경찰관들은 오늘 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돌 것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범죄가 어떤 것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기관 같은 형사사법 기구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1. 범죄통계와 언론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상식 속에 가려진 범죄의 진짜 얼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범죄의 상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진짜 얼굴이라는건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범죄 통계를 범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 ‘거짓말에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를 인용하면서까지 범죄 통계의 무조건적인 믿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범죄 통계인 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자. 흔히들 과거보다 최근 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물어본다면 다들 늘었다고 대답한다. 실제로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과거 1993년 136만건이던 범죄 발생수가 2015년 186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를 보면 범죄가 과거에 비해 36%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범죄 신고율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이다. 범죄 신

고율은 국민의 신고의식 향상,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 증가, 그리고 급속도로 증가한 휴대전화 보급으로 과거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곧, 과거에는 범죄가 발생해도 신고가 되지 않아 숨겨졌다면 현재 와서는 그러한 범죄들 역시 신고가 들어와 범죄 통계에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와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범죄 통계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검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런 빈약한 통계를 전적으로 믿고 판단하는 걸까?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는 소식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믿음직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을 뿐이다.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다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 역시 언론의 탓이 크다. 실제로는 인터넷과 PC방의 보급, 부모 숫자가 자녀 숫자보다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 인해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 여건의 개선,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의 강화로 그 숫자는 점차 더 줄어들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나 언론은 통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왜곡된 정보를 전달 한다. 선정적이고 심각한 범죄 사례를 묶어 호들갑을 떨어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범죄를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뿐더러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범죄 통계의 허점과 언론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바람직하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다.

2. 합리적인 범죄자들

이 책에 극단적인 에세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이 있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람 3명이 있다. ①총기로 위협하는 사람, ②칼로 위협하는 사람, ③아무 흉기 없이 위협하는 사람. 이 중 어떤 상황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 흔히들 ①,②,③ 순서로 대답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의 순서가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한다. 왜냐하면 강도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도는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위협했다는 것은 무기 그 자체를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며 알아서 돈만 빨리 주라는 이야기이다. 애당초 살상을 위해서라면 협박을 하기도 전에 총을 쏘을 것이다. 실제로 흉기의 살상력과 사용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 조사가 있다. 이는 곧 강도가 흉기를 드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합리적인 행동임을 보여 준다. 또 강도는 범죄대상의 매력성과 취약성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최적의 범죄대상을 찾는다. 즉 털 만한 상대를 탄다는 것이다. 이렇듯 강도는 합리적이다. 강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 행위로 인한 비용을 계산하며 강도 행위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이는 결코 합리적인 생각 같지 않다. 왜냐하면 강도가 생각하는 비용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잡히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강도를 포함한 범죄자들에게 미래의

가치는 높지 않기 때문에 체포 가능성이 100%가 아니거나 극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체포 가능성과 형벌의 강도가 절대적인 억제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를 줄이려면 강도의 합리성을 역이용 해야 한다. 그나마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왕이면 빨리 체포하여 강도 행위의 비용을 높여야 범죄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3. 범죄의 원인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 되었다. 특히 범죄의 유전성에 관한 의문은 수 천년부터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범죄의 유전성을 주장한 연구들은 교육 여건이나 고용 상태, 소득 수준 따위의 사회적 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결론을 지은 연구들이었다. 이 후 20세기 초에도 범죄의 유전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 되었다. 대표적으로 쌍둥이 연구와 입양아 연구가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와 일반적인 형제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역시 범죄가 유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쌍둥이 연구 역시 양육방법의 유사성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했고 이에 새롭게 시도된 것이 입양아 연구이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의 경우 친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부모의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유전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쌍둥이와 입양아 연구들을 토대로 글렌 월터스는 메타 분석을 실시 했는데 결론은 그 연구들이 대체로 범죄의 유전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모두 범죄가 유전 되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란 엄연히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범죄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획일적으로 유전성을 적용할 수는 없다. 물론 공격적인 성향과 내성적인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어떤 성장 환경에 놓이느냐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장 과정 초기에서 사회 통제 요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면 내부금지장치가 어린 시절에 발전되지 않으며 결국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가 범죄 발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범죄 발생의 '코딩'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코딩이 매우 강력해도 범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범죄가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박수처럼 범죄 코딩과 범죄기회가 반드시 마주쳐야만 범죄가 일어난다.

4.형사사법의 문제점

현재 형사사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경제 수준별 범죄 형량 선고율을 보면 사회경제 수준에 따라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43년 영국 총리 비서 암살 사건의 범인의 대니얼 맥너튼과 1994년에 일어난 O.J. 심슨 사건의 O.J. 심슨 모두 당대 최고의 변호인 드림팀을 꾸려 무죄 판결을 받은 것들이 그 예이다.

그들이 재산이 없었더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까? 내부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유죄유벌, 무죄무벌’ 같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굳어지길 바란다.

두 번째로는 편중된 범죄 대처이다. 미국 911테러를 예시로 들어보자. 2001년 최악의 테러인 911테러가 일어난 후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수사 인력을 테러 관련 수사로 돌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수사 기간이 길고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 수사부문 역시 축소되었다. 이는 곧 금융 부정이 증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금융위기에는 이 밖에 수많은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금융 부정 및 사기, 그리고 여러 투기들을 제때 적발하고 적절히 규제했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범죄에 대한 대처 역시 이념과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어느 한쪽에 올인한다면 그 피해는 치안 감소로 이어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이다. 근대 경찰의 시작인 영국 런던 경찰은 창설부터 왕당파의 친위 쿠데타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특히나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경찰 11원칙과 8대 업무 지침을 마련하며 경찰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 경찰청장인 로완과 메인이 각각 21년, 39년간 재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영국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찰일 수 있었다. 특히 시위를 막았을 때 두 경찰 청장은 경찰의 참을성을 거듭 강조하며 시위대를 자극하는 언동은 일절 금지했다. 즉 경찰이란 정치권력의 하수인 아니라 오로지 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때 비로소 경찰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된다고 본 것이다. 영국 경찰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경찰봉만 들고 다니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방향의 일관성이 확고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먼 것 같다. 경찰위원회 제도 역시 경찰법의 일부 독소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고 경찰 총수의 짧은 재임기간은 고위 간부들의 정치권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아예 경찰청장의 임기를 한 10년으로 하면 대통령이 관여할 여지를 없애고 고위 간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이 책 저자의 말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린다.

III. 결론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과 본모습,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와 형사사법이 갖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며 우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범죄 현상을 언론에서 말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낸 다음 형사사법 기관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내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범죄는 생각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물학적 요인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범죄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범죄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자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게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배웠다. 특히 범죄자들은 미래 시간에 대한 가치가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기 보다 가급적 빨리 체포 가능성을 높이는게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의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고 견제를 위해 만든 경찰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수사기관 확립이 필요하다.

우수상

‘형사 노인’ 개념 도입의 필요성

- 「패러독스 범죄학; 어느 연령층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를 읽고

2017111313 고 은

I. 서론

II. 노인의 특성 및 노인 범죄의 이유

III. 형법적 개념으로서의 ‘형사 노인’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구성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 범죄의 비율은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찰 범죄 통계를 보면, 2011년 전체 범죄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3%였지만 2018년에는 6.6%로 증가했다.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비율이 감소한 타 연령층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책 「패러독스 범죄학」(이창무, 2012) 역시 범죄의 노령화 현상을 기술하며 노령인구의 사회활동 증가가 노인의 범죄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노인 범죄 사건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2008년 우리나라 국보 1호 송례문 방화사건이다.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경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69세 남성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신축 아파트 건축 부지로 지정되면서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송례문은 누각의 석축을 제외하고는 전소했으며 피고인은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동년에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사건으로는 2018년 귀농하여 혼자 살던 82세 남성이 귀농자 대상 지원 정책에 불만을 품고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 침입하여 엽총을 난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약자, 범죄 피해자로 인식되던 노인이 이제는 범죄 가해자로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형사적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에세이는 책 「패러독스 범죄학」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일반 성인들과 다른 노인의 특성을 알아본 후 형사 미성년자, 형법상 소년과 같은 ‘형사 노인’ 개념의 도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노인의 특성 및 노인 범죄의 이유

1951년 제2차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노인이란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의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5세 이상을 지칭한다.

이들이 저지르는 ‘노인 범죄’의 발생 원인은 크게 신체적 특성, 경제·사회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신체적 특성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과거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졌고 이는 노인들의 활발한 일상생활을 가능케 했다. 「패러독스 범죄

학」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상태도 좋은 상태이지만 노후 준비는 미처 하지 못한 채로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은 생계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주변 지인들의 죽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빈곤, 신체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상실감 역시 노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 더불어 노화로 인한 판단능력 감소와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장애 역시 위 같은 상황에서의 범행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Ⅲ. 형법적 개념으로서의 ‘형사 노인’

노인 및 노인 범죄의 특성과 이유는 노인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판단능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됨을 알려주고 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에의 참여를 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시사한다. 즉, 이들은 일반 성인들과 정신적, 심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를 포함한 형법 및 소년법상 소년처럼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사적 제도가 필요하며 본 에세이는 이러한 대상을 편의상 형법상 노인 혹은 ‘형사 노인’으로 지칭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행 형법 9조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있더라도 없다고 간주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4세 이상일 경우에도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르며 검사에 의해 관할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의 보호처분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 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소년법은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만큼 좋지 않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형사책임능력을 차등적으로 세분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자의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성인 범죄자와 같은 선상에서 다뤄진다. 앞서 말했듯 노인 범죄자는 일반 성인 범죄자와 심리적, 인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처럼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2016년에 발간한 한국 노년학 연구에서 특집 주제로 다뤄진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해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심리학, 법학, 건축학, 로봇공학, 가족학, 의학, 간호

학, 역사학, 식품영양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근거를 들어 의견을 주장했으며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는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형법상 노인 연령 기준 마련을 위해 법학 분야,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형사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확립된 후에는 나아가 고령의 정도에 따른 처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소년이라고 인정되는 연령 내에서도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서로 다른 형사책임능력 기준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 중 제3호 처분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제2호와 제10호 처분은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으로 구분되는 연령 내에서도 고령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처우가 내려져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소년 연령 기준인 19세에 해당하는 형법상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본다면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인은 범죄 노인으로 구분하여 범죄소년의 보호처분과 같은 처분을 내리고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법상 노인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본다면 이들은 촉법 노인으로 구분하여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예시일 뿐이며 노인의 책임능력에 따라 연령 기준과 법적 용어, 처분의 내용과 정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년법처럼 '노인법'도 제정되어야 하며 소년의 연령기준에 따른 차별적 처분처럼 처벌 대상으로서의 노인, 보호 대상으로서의 노인, 책임무능력자로서의 노인 등으로 세분하여 적절하고 개별화된 제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위와 관련하여 소년원과 같은 '노년원'의 도입도 논의할만한 주제가 될 수 있다. 7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과 연한을 이수하게 하고 검정고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성공적인 재사회화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최대 지지자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정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노인 범죄자 대상 보호처분으로써의 노년원에서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위한 디지털 이용 교육, 취업 기술 교육 등이 진행된다면 노인 범죄자, 특히 생계형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IV. 결론

책 「패러독스 범죄학」 제1부 '어느 연령층이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를까?'에 따르면 범죄자의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현상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미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의 노령화가 지극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미국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고연령층 인구의 범죄율이 높지 않다

고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범죄의 노령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에세이는 노인 범죄의 사례들을 들어 노인 및 노인 범죄자의 특성과 노인범죄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노인은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 범죄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상태도 아직 좋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배우자 혹은 주변 지인들의 죽음 혹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이유, 노화로 인한 판단능력 감소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판단 능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므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다르게 형사적 처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의 방법으로 본 에세이는 소년법과 같은 ‘노년법’ 제정을 토대로 형법상 노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의 고령 정도에 따른 보호처분의 세분화와 노년원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범죄율 역시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한국이 형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양재열, 김상수, & 이주연. (2019).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309-332.
- 송승현. (2019).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연령과 형사책임능력의 재검토. 법학연구, 29(4), 75-118.
- 박찬걸. (2011).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16), 71-105.
- 박찬걸. (201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191-222.
- 김정현. (2019).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연령기준. 한국노년학연구, 28, 109-117.
- 이영란. (2011).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15(3), 189-213.
- 육혜련. (2018). 소년원 퇴원 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RI

연구논총, 20(2), 103-134.

- 이창무, 『패러독스 범죄학』, 메디치, 2012
- 통계청 (2019). 2018년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19). 2019 인구추계
- 경찰범죄통계 (2011). 사회인구학적 특성
- 경찰범죄통계 (2018).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수상

소년사건, 절차에 관한 고찰

2018111291 정윤하

I.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우리나라 소년사건 절차

II. 본론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2. 사례에서의 소년사건 절차의 문제점
3.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따른 해결방안

III. 결론

주제 선정 동기

기사의 댓글이나 SNS를 통해 어떤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현행법에 대해 ‘너무 형이 약하다.’, ‘법을 바꿔야 한다.’, ‘사형을 부활시켜라.’ 등의 글과 결과에 대한 공분을 쉽게 볼 수 있다.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만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제는 범죄 관련 기사만 올라와도 댓글을 보지 않아도 예상이 될 정도다. 대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죄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범죄는 소년범죄이다. 소년범죄에 관련해서는 유독 ‘법을 폐지해라’,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라는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국민들이 소년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편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조차도 감정적으로만 화만 내기 급급했던 것 같다. 그래서 소년법을 제대로 알고 싶었고 어렵פות이 알았던 소년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싶었다. 단순히 격노하며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아닌 실제로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이 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소년사건 절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 소년사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은 재판의 종류가 대상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 의해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모두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학교장·보호자·복지시설의 장 등의 통고로 비행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거쳐 형사처분을 받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은 보호자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를 받고 심리를 거쳐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감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내의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로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사례로 소년사건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2017년 9월 1일 오후 9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한 공장 근처에서 A(만 14세), B(만 14세), C(만 14세), D(만 13세) 양이 여중생 E(만 14세) 양을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냈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무릎을 꿇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SNS에 퍼져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E양이 스트레스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폭행의 원인은 2017년 6월 29일 오후 2시 쯤에 일어난 1차 폭행 이후 피해자인 E양이 경찰에 고소했던 일 때문이라고 한다. 1차 폭행에서는 A와 B를 포함해서 C와 D를 제외한 3명이 더 폭행에 가담했다. 2017년 9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A와 B를 보복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월 15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 B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위탁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년원 위탁처분 취소를 받았다. 9월 27일, 검찰은 A, B,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A와 B는 구속 기소를 받았고 C는 불구속 기소를 받았으며 D는 만 13세 미만이어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 또한 1차 폭행에서 A, B를 제외한 가해자 3명은 만 13세 미만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A와 B는 죄질이 심하고 특히 B는 초범도 아니고 위탁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었고 C는 초범이지만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7년 10월 19일, 첫 공판이 있었고 11월 23일에 2차 공판, 12월 21일에 3차 공판이 있었다. 2018년 2월 1일에 검찰은 A, B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 2018년 2월 9일, 소년보호재판에서 A, B는 보호처분 중 10호 처분을 받고 C는 9호 처분을 받았다.

사례에서의 소년사건 절차의 문제점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1차 폭행 가해자인 만 13세 미만 3명과 2차 폭행 가해자인 D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곧바로 소년재판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심리기일이 진행될 수 있다. 중한 비행사건이므로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면 심리기일이 곧바로 잡히고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4주가량 조사 및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속행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시설로 보내진다. 이렇듯 소년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후 2~3개월이면 법원의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절차 진행과정에서 소년의 가정환경, 비행동기, 학교생활,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 제반 환경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한 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반면 형사법원으로 송치된 소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에서 최장 10일, 검찰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된 다음 기소되어 1

심 판결 또는 결정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 구속된다고 했을 때, 최장 7개월 동안이나 구속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다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소년이 구속된 지 적어도 5개월 정도 지난 사건들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A, B의 경우, 구속 기소된 2017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2018년 2월 9일까지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절차의 지연과 더불어 다른 가해자보다 죄가 중해서 더 많은 조사와 교육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구속되어 있는 4개월 동안 소년보호이념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교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결구금장기화로 인해 성인범죄자들로부터 악감화 우려도 높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만큼 죄가 중한 소년이라도 대상이 소년인만큼 순차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소년의 비행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형사법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A와 B의 경우처럼 형사법원에 갔다가 다시 가정법원에 와서 중복된 재판을 치르는 것은 마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항소해서 지방법원으로 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구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제도는 법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조사자료가 부족한 검사가 선의권을 갖고 있는 것과 이원화된 소년사건 절차로 인해 소년이라는 대상에 맞지 않는 재판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소년사건 절차에서 비롯되므로 현행 절차를 개선·수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따른 해결방안

1) 독일

독일은 1923년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을 처음 제정하였고, 이는 교육이념에 근거한 일반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년법과는 달리 소년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 소년법원법에 의하면, 검사는 소년에게 비공식적 절차 중단(다이버전)을 부과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모든 소년사건이 소년법원에서 심리되므로, 독일은 선의권의 행사 주체가 문제되지 않는 일원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이 소년법원에 공소제기 된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을 법원선의주의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교육처분과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선택권을 뜻하는 선의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소년법원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교육처분, 징계처분, 소년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교육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형벌적 성격을 가지면서 세부적 내용에서 우리의 보호처분과 유사한 처분도 포함하고 있고, 소년형벌은 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소년법원법 제17조 제1항). 또한 그 집행을 지휘하는 권한을 검사가 아닌 소년법원에 부여하여 소년법원이

소년 형사사법절차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소년사법절차와 같이 하나의 재판으로 소년에 대한 처분을 정해 소년법원 판사가 교육처분,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명할 수 있다면 A, B, C의 경우처럼 중복된 재판을 피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1923년의 소년법원법에 의하여 성인과의 분리, 구분 그리고 교육형 이념과 재사회화에 대한 전면적 도입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소년교도소, 소년 구금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A, B의 경우처럼 성인범죄자들로부터의 악감화 우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전문성과 조사자료가 부족한 검사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년에게 맞는 전문성과 조사자료로 더욱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결정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일과 같이 독자적인 소년형사사법제도로 바꾸려면 대대적인 소년법의 개정과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2) 미국

미국은 주마다 다른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지만, 대체로 연방정부가 소년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 구체적 법령 제정과 집행은 주 정부가 한다.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하는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해 소년을 소년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공식적 사전 선별절차를 거친다. 법원 내나 혹은 법원 밖에 설치된 선별기관(Intake Department)은 사건이 소년법원의 기능에 합치하는 사건인지 여부, 합치한다면 사안의 성질에 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할지를 결정하고, 소년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처리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소년법원에 송치된 사건의 40~50%는 판사에게까지 도달하지 않고 선별 단계에서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재판으로 이송하고, 다른 소년들은 처분심리를 거쳐 불처분, 벌금 및 배상명령, 사회 내 처우, 수용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시스템은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절차의 지연과 중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검사선의주의가 가지는 단점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사법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절차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구치소 내에 성인과 소년이 함께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A, B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인과 분리된 구치소 환경을 갖추고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절차를 본받아 우리나라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선의권의 주체를 법원으로 바꾼다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문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결부되면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구속 당할 경우, 미결구금의 장기화, 소년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 약감화의 우려가 있었고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인 절차의 구조를 나타냈다. 또한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도 볼 수 있다. 소년사건 절차가 일원화가 되든지 이원화로 유지하여도 소년재판부에게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면 위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소년사건 절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돌되는 사안들이 있어도 더 나은 소년사법제도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소년사건 절차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수상

형벌의 정당성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대안

2019111259 방지원

I. 서론 - 형벌의 의미/ 주제 선정 동기

II. 본론

1. 보편적 윤리 - 인간성 및 인간의 존엄성
2. 형법 위의 이념 -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3. 아나키즘 시각 - 권위와 지배에 대한 거부
4. 형법에 대항하는 힘 - 회복적 사법

III. 결론

I. 서론

- 형벌의 의미

처벌(處罰)은 일반적으로 벌을 주는 것을 뜻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처벌은 국가 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발동을 의미하므로 형벌과 동의어다. 형벌 행사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개개인의 범죄 행위이다. 형벌의 기능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시민에 대한 범죄 예방이다. 대표적으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등이 있다.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은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안처분이지만 처벌이 아니다.

- 주제 선정 동기

저자는 형법과 형벌을 ‘정형화된 사회 통제’로 정의한다. 또한 과거부터 당대까지의 형법과 형벌을 정리한 것을 넘어 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응보와 예방의 개념이 나오고, 형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한다. 제2장을 읽으면서 형법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겼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이념, 아나키즘, 회복적 사법. 이 4가지를 논거로 들어 유기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보편적 윤리 -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형벌은 인간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와 사람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간성,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문구이다. 처벌로 인한 낙인은 범죄자의 인간적 존엄성 무시하는 시선을 만들고, 이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가 범죄자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기 어렵게 하므로 처벌은 비인도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은 인류의 공통된 이상이며 약속이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처벌하며 인간성을 잃게 하는 행위가 어떤 권위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형법 정책자들이 형벌 행사 권위의 정당성을 사회계약론에서 찾았다고 하므로 그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2. 형법 위의 이념

- 사회계약론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 18세기 후반부터 형벌과 인간성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있었다. 법과 제도를 봤을 때, 신체형과 사형은 인간성뿐만 아니라 사회계약설에도 위배된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국가가 개인들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위임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계약설에서는 개개인이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이러한 주권은 양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형, 신체형과 같은 형벌은 사회계약론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그렇다면 사형과 신체형 외의 처벌들은 합당할까? 민주주의 이념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민에 의한 지배이다. 그래서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의사를 강제할 권위가 있다. 이는 시민권과 치안 유지의 결합이며 정부 형성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형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형벌을 부과할 합당한 권력이 있다. 실제로, 현실 민주주의에서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형벌의 완벽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아나키즘 시각 - 권위와 지배에 대한 거부

아나키스트는 민주주의가 가진 의사 강제권을 비판한다. 처벌은 반드시 권력을 수반하고, 권력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권력적 계급을 만든다. 계급의 존재는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된다. 힘의 차이가 있다면 발언권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은 정당한 권위가 아닌 폭력적인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점이 큰 문제다.

아나키란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과거의 국가주의와 권위주의는 지배받지 않는 대중을 무지하고 계몽이 필요한 야만인으로 봤다. 또한 지배가 없는 사회를 혼돈이라 매도하며 지배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나키즘이다. 아나키스트에게 아나키는 혼돈이 아니라 진정한 질서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서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대리자에게 힘을 위임하는 것은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국가 형성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국가와 모든 국가의 권력(법, 경찰, 감옥 등)을 제거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법과 경찰이 사라지면 범죄가 치솟으리라 생각하지만, 바쿠닌은 "범죄는 국가만이 가진 특권이다"라고 언급하며, 역설적으로 법이 사라지면 범죄도 사라질 것이라 주장한다. 주의할 점은 아나키스트의 질서 개념을 일반적인 질서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인민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는 혁명적인 아나키즘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이중 권력으로 현 질서에 대항하는 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형벌이라는 현 질서에 대항하는 힘으로 회복적 사법이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응보와 예방효과라는 형벌의 이익 측면과 비교하여 제시하겠다.

4. 형법에 대항하는 힘 -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범죄로 인한 손상에 비례하여 국가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개념을 부정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크게 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범죄로 인한 손상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 범죄 이전의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회복의 모든 주체이자 대상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이며 국가는 이 과정을 조정하므로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불평등한 권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처벌과는 대조적이다.

가해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정신적 사과와 물질적 책임)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적 구조에 의해 벌어진 범죄의 경우, 범죄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

“형벌의 주체는 국가이고 대상이 범죄자다.”라는 것은 처벌 과정에서 범죄의 대상자인 피해자가 소외됨을 의미한다. 처벌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합당한 응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증으로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회복적 사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사유를 듣고 나서, 그를 용서하고 선처를 원한다고 한다. 용서와 선처는 피해자의 정신적 만족을 뜻하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한 지역사회에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뒤 해당 지역에는 불안감이 조성되며 이는 또 다른 범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처벌 과정에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은 범죄에 무지하기에 피해자에게 2가 가해를 저지른다. 반면에 관계 회복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중 범죄자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은 범죄자의 반성과 노력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는 범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주기도 하므로 관계 회복 과정에 참여가 요구된다.

Ⅲ. 결론

형벌은 인간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사형, 신체형과 같은 형벌은 사회계약론에 위배되며,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시스템이지만 권력과 지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형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형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형벌을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이 필요하다. 아나키적인 관점에서 형벌에 대항하는 비권력적이고 평등한 질서로 회복적 사법을 제시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이미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적 손실을 키우는 형벌과 다르다. 이 점에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준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가했는가.’였다. 이제 평가할 부분은 ‘어느 정도의 손상이 복구되거나 예방되었는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이다. 즉, 만족감이 공정성 내지 비례성의 개념을 대체한다.

우수상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피해자 비난의 심각성

-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이다

2019111282 김은빈

I. 서론

II. 본론 - 피해자다움 강요와 극단주의적 양상

1. 김지은은 ‘피해자’다웠는가?
2. 피해자다움의 신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3. 피해자다움 강요의 극단주의적인 양상
4.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III. 결론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다움'의 프레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왜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가만히 당했느냐?”, “왜 곧장 말하지 않았느냐?”, “좋아했던 것 아니냐?” 이는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비서였던 김지은이 안희정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 대중, 주변인에게 들은 비난이다. 김지은과 안희정의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악을 쓰며 저항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바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과 대중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며 김지은을 비난했다. 1심에서 법원은 김지은의 ‘피해자다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피해자다움’의 모습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다움’이라는 틀 속에 피해자를 가둬두려는 실태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를 극단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II. 본론

-피해자다움 강요와 극단주의적 양상

1. 김지은은 ‘피해자’다웠는가?

안희정의 김지은 성폭행 피의사실들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안희정에게 무죄를 판결하였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김지은의 <피해자다움의 부재>를 들었다. 재판부 판결문은 “‘피해자로서의 일반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며 ‘피해자다움’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에 입각하여 사건을 논의한다. 재판부는 “첫 간음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가해자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물색하려고 애쓴 점”, “첫 간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와인바에 동행하여 담소를 나누었던 점”, 피해자는 간음 사건 후에 “제 3자와의 사적인 대회에서조차”, “가해자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한 점 등의 사건들을 나열한다. 재판부는 이들에 기초해 김지은의 피해자다움에 대해 의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정확한 개념의 정의 없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지만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자명하지 않다. “피해자다움”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성향이나 행태의 평균적 속성을 표시한 것이고 주눅들음, 회피성, 숨김 등으로 나타난다. 법원은 김지은이 이러한 속성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김지은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지은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 쓴 글을 발췌했다.

“상사와 주변의 평판이 절대적인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월급을 받아 학자금을 갚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생계에 지장이 왔기에 바로 관두지 못했다.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그만두서는 안됐다. 이 거대 권력 안에서 어떻게라도 눈 밖에 나면 나는 어떤 일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안희정을 수행하며 김지은은 그의 권력을 실감하고 그와 싸울 수 없음을 느꼈을 것

이다. 일과 범행 사실을 독립된 것으로 분리하고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비피해자의 관점, 사회 주류인 남성의 관점은 디폴트 관점으로 간주된다. 남성중심적 권력이 만든 ‘피해자다움’을 바탕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억압받는다. 안희정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 주류의 “피해자다움” 기준 그대로 김지은에 대해 평가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했다고 하였지만,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주류의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한 것이지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다움의 신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의 성폭력 방지와 처벌에 대한 법제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 성폭력 문제는 「정조에 관한 죄」로서 남성중심적 가치 유지를 위한 여성의 정조 보호의 문제로, 여성 개인 혹은 여성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폭력이 동등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치명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는 피해자의 삶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언론은 자극적인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피해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도했다. 피해자의 회복불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담론 형성과 법제화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낙인이 생겼다. 성폭력 피해는 1차 사건 이후 가족과 주변의 반응, 경찰/검찰/법원 등 공적 기관의 대응, 사회의 통념에 의해 재구성되며, 이에 따라 피해의 덩치가 변한다. 다음 피해자 상담 사례는 1차 피해 이후의 상황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제가 깨야”라는 식의 뒷담화는 예상했던 거지만, 웃고 있는 자신의 옆을 속 지나가며 그런 일이 있고도 웃음이 나오냐는 식으로 수군거리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전학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제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게 창피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웃고 떠들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종종 평생 잊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기지만 후유증에 대한 강조가 ‘여성의 피해자화’라는 문제와 만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형사사법 기관과 언론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병리를 과도하게 이용한 탓에, 피해자들의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 단정하고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의 틀을 벗어나면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다움 강요의 극단주의적인 양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다움 강요는 본질적으로 ‘여성혐오’에서 시작한다. 피해자다움의 편견은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여성, 수동적인 여성 등의 편견을 전제로 형성된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에서 저자는 극단주의의 조건으로 ①배타성 ②광신 ③강요 세

가지를 든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피해자다움 강요 역시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조건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①배타성

배타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배척하는 성질’이다. 또 ‘배척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다.’이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배타’한다. 그런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며 ‘거부’한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을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를 배척하는 이들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 친구, 이름 모를 네티즌이나 기자,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이 될 수도 있다. 배타성이 극대화됐을 때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은 피해자는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피해 진술이 오히려 무고의 증거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한 성범죄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언쟁을 벌이다 뒤늦게 신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는 이런 피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다움’의 프레임에 맞지 않을 때 사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거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광신

표준국어대사전은 광신을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광신이란 이성 혹은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는 성폭행 가해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가해자 안희정은 조작된 진술들로 피해자 김지은을 ‘이상한 여자’ 프레임에 몰아넣었다. 평소 침실에 들어오고, 남자를 유혹하는 엽기적인 여자라는 주장은 대중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정보처럼 회자되었다. 이런 상황은 공소 사실에 제시된 범죄 사건과 무관하기에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었지만 조작된 진술들의 힘은 강력했다. “김지은은 여성 단체 뒤에 숨어서 말도 안 한다.”, “악녀!”, “감옥에 처넣어라.” 등과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다. 안희정 측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최근 n번방 성범죄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가혹하게 성을 착취한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한편,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N번방 피해자들 알고 보니 팬티판매, 똥오줌 먹는 영상 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 영상 속 유튜버는 ‘N번방의 진정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라며 ‘피해자들이야말로 가해자’라고 말한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범죄에 노출했으며, 큰 돈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이유다. 피해자는 사실 가해자이므로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110,446회이며 추천수는 무려 9천5백을 넘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더러운 것들한테 왜 돈주냐??”, “조건 만남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 이젠 성매매가 꿀 직업이네.”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이 댓글들의 추천 수 또

한 삼사백을 웃돌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고 이들의 범행 사실 역시 부인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③강요

이 사회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는지 앞서 나열한 사례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강요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다.’이다. 그들은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유튜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고정관념은 피해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함정에서 여군 부하에게 성폭력을 가한 상관 가해자 2명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낮은 계급인 피해자가 직속 상관인 1차 가해자와 배의 함장인 2차 가해자에게 느꼈을 위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2심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가해자의 위력을 무시하였다.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모습을 ‘억지로’ ‘강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극단주의는 반드시 혐오를 낳는다. 혐오는 본질을 흐린다. 본질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인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여성의 동의 없이 추행이나 강간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건과 무관하게 여성의 행실이나 평소 품행 따위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생긴다.

4.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 존중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존중주의’와 ‘물증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주장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 사건의 의미 구성과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존하므로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말이 옳다고 전제돼 피해호소가 곧 유죄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여성의 주관적인 의견을 전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단, 피해호소인의 진술일지라도 일관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도 근거로 포함시켜야 한다. 즉, ‘물증 지상주의’는 배척하되 여성의 진술은 그 정합성이 있다면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연대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연대’이다. 김지은의 미투 이후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들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부터 재판 진술,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등의 과정에서 함께했다. 1

심에서 안희정에게 무죄 판결이 난 이후 2심에서는 변호사들이 추가 합류하여 재판을 준비하였고 2차 가해 관련 변호를 맡아주기도 하였다. 사회에 만연한 피해자다움의 편견은 여전히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때 피해자와의 연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6. 결론

안희정 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다움’의 신화가 어떻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다움’의 편견 안에 피해자들을 어떻게 가둬두는지,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배타하며, 피해 여부의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의 틀에 맞추도록 피해자들을 강요한다. 피해자들은 1차적인 피해뿐 아니라 범행을 당한 이유 주변과 사법기관의 반응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성범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는 ‘여성의 동의 여부’이지 평소의品行이나 범행 이후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합설 있는 진술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수상

극단주의와 두려움

2019111304 김소연

I. 서론

II. 본론

1. 극단주의 사회
2. 극단적인 개인
3. 극단주의 극복

III. 결론

I. 서론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향을 띤 개인들이 평등하고 고루 분포되며,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극단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의 균형에 균열이 일어난다.

이 책의 저자는 극단주의를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극단주의자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가치관 아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광신한다. 이는 곧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도 동조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는 더 큰 반발감을 가진다. 그 결과, 극단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극단주의 사회에서는 언급된 극단주의의 구성 요소가 끝없이 악순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난다.

일부 학자들은 정신적 혼란 혹은 애매모호함을 벗어나 확실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지적 종결' 욕구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주요한 욕구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회,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세계관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더욱 커진다. 따라서 극단주의는 '두려움'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가 되기 쉽다. 하지만 인간은 인식적, 경험적 한계를 지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다. 세상에 틀림은 없고, 다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인 타인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극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주의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개인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드는 극단주의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극단적인 개인의 한계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극단주의 사회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화되면서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완벽한 정의와 선악은 정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점점 어떤 결정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극단주의는 특히 사회적 전염현상이나 폭포현상과 같이 집단에서 더욱 극대화된다. 미국 심리학에서는 극단주의의 원인으로 집단 극단화를 제시한다. 이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내집단을 이루고,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보다 두드러지기 위해 기존의 사고를 더욱 강화하여 극단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 의견이 집단 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경우, 집단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격리를 통해 집단 내 극단주의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집단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집단 사고는 집단 내에서 다른 비판적인 사고를 차단하고 타 집단에 대한 멸시와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에서 작가는 한국 사회가 그 누구도 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형적인 ‘학대 위계 사회’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학대 위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력감(권위주의적 성격), 굴욕감(자존감의 손상), 고립과 고독(사회 혹은 관계로부터의 배제), 삶의 의미 상실 등을 반복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학대를 당하는 것은 곧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이므로 학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극단주의가 되기 쉽다. 특히 혐오는 극단주의의 구성 요소이자 극단주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대 위계 사회’에서의 학대는 혐오와 결을 같이 한다. 극단주의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차별과 혐오를 낳고, 그 결과로 학대 위계 사회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학대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계속되어왔다. 다만 그 이유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원시 시대에는 식량과 생존을 목적으로 단순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총과 칼을 이용하여 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혐오는 사회적 혐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쟁이 과열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타인에 대한 위계적 학대를 자행한다.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 그 도구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까지 이루어진다. 중세의 마녀사냥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까지, 시대가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손에 쥘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분투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극단주의가 한층 심해질 것이다. 극단주의가 팽배한 학대 위계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나의 믿음을 강요하게 된다. 모두가 서로를 이기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사회의 구조가 우리 모두를 학대하며, 학대자로 만들고 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할 수 없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학대와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인 두려움은 경쟁 상황 속에서 극대화되고, 학대당하지 않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을 혐오하고, 밟고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열된 경쟁에서 조금은 물러서는 것이다.

2. 극단적인 개인

저자는 혐오의 일면에 극단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극단주의의 구성 요소를 배타성, 광신, 강요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배타성은 권위주의를 광신하여 세상을 둘로 구분하는 흑백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신이 무조건 백이고 타인은 흑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는 그가 맹목적 신념 혹은 광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은 비판적 사고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세상 만물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과 같이 이분법에 따라 구조화할 수는 없다. 극단주의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 이와 같은 배타성은 이성적 사고의 부재라는 한계를 지닌다. 극단주의자들이 이성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사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광신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극단주의자들이 완전주의 혹은 절대주의, 즉 자신의 무오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주의자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는 곧 동시에 나에게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하는 강요로 이어진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꼰대는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은 묵살해버린다.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은 결과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옳음과 틀림을 정의할 수 없다. 그렇기에 틀린 생각이나 행동은 존재할 수 없다. 다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행동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순간 개인의 세계는 딱 한 뼘 크기로 줄어든다. 타인과의 의견 교환과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간주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극단주의는 두려움과 큰 관련이 있다. 극단주의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배타성과 광신, 강요 그리고 혐오로 설명할 수 있다. 배타성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혐오 역시 다름에 대한 두려움에 원인을 둔다. 이러한 배타성과 혐오는 서로를 촉진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혐오는 배타성과 광신, 강요의 결합에 의한 결과물이다. 극단주의의 바탕이 되는 혐오는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타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이고, 둘째는 자신을 긍정하려는 감정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타인 혐오의 원인을 형성한다. 단순히 타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싫

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혐오는 기본적인 '거부 반응'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자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은 나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와 타인을 구분 짓는, '다름'과 '차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와 타인이 뚜렷하게 구별될수록 나의 정체성은 명확해진다. 더 나아가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집단을 이루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혐오는 기본적으로 자기혐오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다. 때문에 극단주의의 원인은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의 결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 작가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 자존감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이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존감 손상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극단주의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의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열등감은 우월의 욕망을 낳는다. 이는 일종의 복수심으로, 나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타인보다 우월해져서 그들을 무시하겠다는 보복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혐오가 향하는 명확한 대상과 원인을 찾고, 그를 인정해야 한다. 혐오라는 감정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끊임 없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타인과 내가 대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3. 극단주의 극복

극단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 발 물러나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타인의 의견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가치관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타인의 의견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것은 외골수마냥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기 비판적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이 이상적인 태도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성향(극단적 성향까지도)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나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다름과 틀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타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고 해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타인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무이다.

극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런 의견을 가지지 않은 채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즉 다수결의 원리를 원칙으로 삼지만,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소수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수자들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Ⅲ. 결론

책에서 저자는 ‘독립운동가는 극단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비타협성은 극단주의자의 배타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극단주의를 정의할 때는 초점을 '맨 끝'이나 '과잉'이 아니라 배타성에 맞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개념과 다양한 가치관을 일렬로 늘어놓고 양 극을 정의할 수는 없다. 저자 또한 극단은 양이 아닌 질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념의 내용, 즉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강도가 더 세지거나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양적인 변화만을 기준으로 삼아 극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혁명은 극단주의자에 의해 시행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발전은 그 외의 다수에 의해 천천히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방법 대신, 온건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면서도 충분히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주의의 원인은 육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에 대한 위협은 혐오와 분노에서 기인한다. 또, 혐오와 분노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타인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공감능력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부정적인 불안전성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발전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 근거 없는 믿음과 자만을 경계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명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극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